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3월 6일, 김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3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4.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6.4.14.) 상정, 축조심사

제2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1.) 상정, 축조심사

제4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2026.5.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5.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현의원)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 국민이 해당 행사를 무료 또는 과도한 추가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송수단 확보 의무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가시청 가구를 확보한 유료방송사업자가 국민관심행사등을 단독 중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상파 직접수신 가구, 도서산간 지역 주민, 디지털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의 시청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화적 기본권에 기초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계방송권 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행정당국에 사전에 제출되지 아니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나 시정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중재 및 제재 기능의 실효성이 제약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공적 성격에 비추어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계방송권 계약의 사전 제출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복우)

- 주요 스포츠 경기대회를 공공재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계방송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향상과 채널선택권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다만,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과 관련하여, KBS와 MBC를 통한 실시간 중계 포함 의무가 타 사업자에게 중계방송에 대한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지 않은지, 95%의 가시청가구 비율 기준의 산정 방식과 적용 대상을 명시하는 입법 방식이 타당한지, 성인남자 대표팀과 성인여자 대표팀을 달리 취급한 것이 타당한지, 실시간 중계 이행과 중계조건 변경 명령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이 입법 목적과 수단 간 비례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중계방송권 계약 관련 자료 제출의무의 도입이 방송사업자의 영업·계약의 자유 및 국제기구와의 계약상 비밀유지원칙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을 기 체결된 중계방송권 계약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부칙이 특정 방송사 및 구체적 계약사항에 대하여 개별적 법률로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비추어 타당할지, 소급입법금지원칙으로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제한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김현의원(제2217305호), 한민수의원, 한정애의원, 신성범의원, 이훈기의원, 최민희의원, 조은희의원 및 김현의원(제2217513호)이 각각 대표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 국민의 알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노력과 기업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함.

-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기업 공유를 통한 사회 통합, 정보격차의 해소에 있으므로, 국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각지대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에 찬성함.
- 보편적 시청권 논의가 시작된 이유는 국민의 접근권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성과를 지상파방송의 뉴스 전달력을 동원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함.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민간 계약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아닌지와 소급입법에 의한 위헌성 지적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동계올림픽의 중계방송이 현행 법령상 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보임.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